

자주 묻는 질문들 —  
나사렛 교단 장정 2017-2021

장정 영어판 책은 파운드리 출판사(Foundry Publishing)를 통해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PDF 파일이나 검색할 수 있는 버전이 영어로 준비돼 있습니다. 다른 언어로 된 것들도 최종본이 준비되는 대로 온라인에 게시될 것입니다.

여기에 명시된 조항 번호는 *나사렛 교단 장정 2017-2021년 판*에 의거한 것입니다.

1. 개교회 선거에서 교회 규정(directives) 보다 민법 절차(civil law procedures)에 더 우선권이 있는가? (조항 113.4, 123, 124, 142)

*예.*

2. 교회의 목사는 개교회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가? (조항 113.1, 522, 524, 526)

*예. 그 목사가 임시 또는 목회적 직임(supply pastoral assignment)을 부여 받았을 경우 그 또는 그녀의 회원권이 그 교회에 있어야 함.*

3. 교회 연차 총회는 공고가 이루어지고 두 주일에 걸쳐 같은 예배 시간에 개최될 수 있는가? (조항 113.7)

*예. 하지만 연차 총회는 적어도 개최 2주일전에 공고되어야 한다. 총회는 오전 예배 후에 개최된다. 그리고/ 또는 공고된 바와 같이 그 다음 주일의 저녁 예배에 개최된다.*

4a. 교회 위원회(church board)의 최대 인원은 몇 명인가? (조항 113.12, 127, 137, 141)

*연회 감독과 실행위원회가 다른 계획을 승인하지 않으면, 교회 위원회의 최대 인원은 25명이다.*

4b. 교회 위원회의 최소 인원은 몇 명인가? (조항 113.12, 137, 141)

*대체 위원회와 위원회 구조(alternative board and committee structure)가 승인되지 않은 경우 최소 인원은 6명이다. 대체 위원회와 위원회 구조가 승인 되었을 경우 최소 인원 제한은 없다.*

참고: 중앙 감독회의 지침은 (1986년 12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성도들의 숫자가 적은 교회에서 한 사람이 교회 운영위원(trustee)과 주일 학교장 등 두 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제한해 위원회의 인원을 감소시키는 장정 조항은 없다. 하지만 그러한 제한이 없는 한편 영적으로 자격이 갖추어져 교회 위원회 위원의 책임을 수행할 많은 사람이 있는 곳에서 그러한 일은 장려되지 않아야 한다.”

5a. 목사가 나사렛 국제 청년회(NYI) 회장으로 선출될 수 있는가?

아니오. 그러나 교회 위원회의 승인 하에 목사도 그러한 직책을 맡을 수 있다.

5b. 나사렛 국제 청년회(NYI) 회장, 국제 주일학교 및 제자도 사역(SDMI) 교장, 또는 나사렛 국제 선교회(NMI) 회장이 교회 위원회의 이사(trustee)나 사무장(steward)으로 선출될 수 있는가? (조항 137, 141, 146, 150, 152.2)

예.

6. 목사가 아닌 사람이 개 교회의 교회 위원회 의장으로 지명될 수 있는가? (조항 128, 516.15)

아니오. 개교회 교회 위원회는 회무를 진행하기 위해 한 사람을 위원회 회의 “주재자”(Presider)로 지명할 수 있다. 그러나 장정은 목사가 “개교회 교회 위원회의 의장(chairperson)”이라고 규정한다.

7a. 교회위원회 서기와 재무는 교회위원회 회원이어야 하는가? (조항 129.19, 129.20)

아니오. 위원회는 선출된 위원들 외에 외부에서 그러한 임원들을 선출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임원들은 위원회에서 투표권은 없고 의장이 승인할 경우 발언권만 있다..

7b. 교회위원회 서기와 재무는 그들을 서기 또는 재무로 선출하는 교회의 회원이어야 하는가? (조항 113.11, 129.19-129.20)

예. 그들은 임원으로 봉사하도록 요구 받은 나사렛 개교회의 회원이어야만 한다.

8. 개교회의 어떤 회의에서든지 회의 시 회원들이 회의 현장에서 추천하는 것이 (nominations from the floor) 허용되는가? (조항 33, 113.10)

예. 모든 연차 또는 특별 회의에서 승인을 위해 투표 용지가 제시되면 회원들이 회의 현장에서 이름들을 추천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명단은 선거가 실시되기 전 점검을 위해 추천 위원회에 회부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검이 진행되는 동안 회무는 지연된다. (추천 위원회는 추천된 사람들의 피 추천 자격이 충분한지 여부를 장정 33조에 의거해 점검한다). 추천 위원회가 투표 용지에 기재할 추가적인 이름들을 추천하면 회의는 조정된 투표용지를 승인한다.

9. 연회 총회 시 회원들이 회의 현장에서 추천하는 것이 가능한가? (조항 33, 203)

예. 중앙 감독회의 지침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2013년 9월 17일). “장정 203조의 연회 추천위원회를 ‘사용’하라는 규정은 회의 현장에서 추천하는 것을 금하지 않는다. 연회 총회 시 회의 현장에서 추천이 이루어지면 그들이 장정 34조에 합치한다는 것을 점검하기 위해 피추천자 명단은 추천 위원회에 회부된다. 장정 33조에 합치해 우리의 개교회는 다음과 같은 ‘교회의 활동적인 회원들을 교회의 직분자로 선출하도록 지도 받는다. 온전 성결의 체험을 고백하고, 그들의 삶을 통해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공적으로 증거하며, 나사렛 교단의 교리와 정치 형태, 실천 사항을 믿고 따르고, 출석과 적극적인 섬김, 십일조와 헌금을 통해 개교회를 신실하게 뒷받침하는 사람. 교회의 제직들은 열방에 그리스도를 닮은 제자를 만드는 일에 전적으로 동참해야 한다.’ 우리의 연회 임원들도 동일한 최소 요건을 갖출 것이 기대되어야 한다.”

10. 목사(a pastor)는 개교회에서 보조자(assistant)를 해고할 수 있는가? (조항 159.2)

예. 고용은 일년 기간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목사는 재 지명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고 따라서 고용을 끝낼 수 있다. 그러나 고용의 종식이 고용 기간 종료 (교회 재정력 종료) 이전이면 교회 위원회가 그러한 결정을 다수결로 결정해야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연회 감독이 승인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다.

11a. 담임 목사가 사임하면 교회의 어떤 직원이 사임해야만 하는가? (조항 159.5)

**모든** 목회 사역자가 반드시 사임해야 한다. 모든 유아원이나 유치원의 (dayschool or preschool) 원장/ 행정 직원도 새 목사가 직무를 수행하기 시작한 해의 학교 연도가 끝나는 시점에 사임해야 한다. 그러나 개교회 교회 위원회와 연회 감독은 임시 직무들을 지정할 수도 있다. 연회 감독은 사무실 매니저나 행정 도움을 주는 사람들의 사임 여부를 상황에 따라 결정해야만 한다.

11b. 담임 목사가 사임하면 교회 사무실 비서(office secretary) 또는 교회 관리 직원도 사임해야 하는가? (조항 127, 159.4, 159.5)

*아니오. 단지 사역 직원만 사임해야 한다. 특정한 입장에 의거해 연회 감독이 필요하다고 결정하지 않는 한, 비서와 관리 직원은 사임하도록 요구 받지 않는다.*

12. 연회 감독이 임시 목사(supply or interim pastor)를 지명할 수 있는가? (조항 212, 212.1, 524, 526)

*예. 개교회 교회 위원회와 상의해 그렇게 할 수 있다. 임시 목사를 지명할 경우 개교회 교회 위원회와 연회 실행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지명할 수 있다 (may be appointed).*

13a. 개교회에서 비서나 관리 직원을 고용하는 일을 연회 감독이 승인할 필요가 있는가? (조항 211.13)

*아니오.*

13b. 급여를 받지 않는 직원이 (부목사) 연회 감독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는가? (조항 211.13)

*예.*

14. 자신의 신임장을 중앙 총무에게 반납한 지위(filed status)에 있는 사역자가 결혼 주례를 할 수 있는가? (조항 538)

*아니오. 참고: 이러한 점은 신임장이 철회(dropped), 제거되거나(removed) 신임장을 포기한(surrendered) 상태에 있는 사역자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15. 첫 2년간의 목회 사역 후에 특별 교회/ 목회 관계 심의가 요청될 수 있는가? (조항 113.8, 125)

*예. 참고: 특별 교회 회의 소집 통보는 적어도 두 정규 예배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16. 정기 교회/ 목회 심의를 위해, “목회 사역 두 번째 주년 60일 이내에”라는 표현의 정의는 무엇인가? (조항 123)

사역 시작 기념일(anniversary) 60일 전 또는 60일 이후를 의미한다.

17a. 임무를 부여 받지 않은 사역자(unassigned minister)가 개교회의 연회 총회 대의원으로 선출될 수 있는가? (조항 201)

아니오. 개교회에서 선출되는 연회 총회 대의원은 “평신도” 대의원이다. 직무를 부여 받지 못한 사역자나 직무를 부여받지 못한 지위상태로 은퇴한 경우 그러한 사람은 연회의 대의원이 될 자격이 없다. 참고: 은퇴 상태인 직무가 없는 사역자는 연회가 인정한 활동을 위해 지정된 지위에 있고 연회 총회가 개최되는 시점에 그 임무를 수행하고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7b. 자신의 신임장이 보관, 제거, 반납된(filed, removed, or surrendered) 지위에 있는 사역자가 연회 총회의 개교회 대의원으로 선출될 수 있는가? (조항 201, 538)

아니오. 직무를 부여 받은 사역자만이 자신들의 직무로 인해 대의원이 될 수 있다. 사역자의 신임장이 보관, 제거, 반납된(filed, removed, or surrendered) 지위에 있는 경우 그 사람은 “직무를 부여 받은” 사역자가 아니다. “포기한”(resigned) 신임장 지위를 갖고 있는 사역자는 개교회에 의해 평신도 대의원으로 선출될 수 있는데 신임장을 포기함으로써 자신이 영구히 평신도가 되기로 선택했다는 사실을 표시했기 때문이다.

18. 교회 회원들을 받은 교회 형태의 선교나 부모 가맹(church-type mission or parent affiliated congregation which has taken in church members)이 연회 총회에 대표를 보낼 수 있는가? (조항 113.15)

예.

19. 은퇴한 사역자는 연회 총회에 매년 보고해야 하는가? (조항 536.2)

예. “자신의 통제 범위를 넘어서는 제한으로 인해 보고를 할 수 없는 은퇴 교역자의 경우 연회 목회 심의부 또는 사역 위원회(board of ministry)의 권고 하에 연회 총회는 그러한 사역자에게 ‘예외’ 지위를 승인할 수 있고 따라서 영구적으로 연례 보고 의무를 완수한 것이다.”

20. 개교회 교회 위원회가 그 위원회의 공석을 채울 수 있는가? (조항 139, 144, 146, 810.108, 811. V조)

아니오. 연례 또는 특별 선출은 장정에 묘사된 절차에 의거해 채울 수 있다. 교회 위원회가 원한다면 공석을 채우지 않고 남겨둘 수 있다.

21. 개교회 또는 연회의 부서나 위원회(board or committee) 지도자가 공석이 될 경우 그 자리를 채우기 위해 지명 또는 선출된 사람은 얼마 동안 그 지위에서 사역할 수 있는가?

공석을 채우기 위해 지명 또는 선출된 사람은 자신이 대신하는 사람의 잔여 임기 동안 사역할 수 있다.

22. 위원회의 회원이 아닌 사람이 투 개표 위원으로 봉사할 수 있는가?

예.

23. 교회 위원회 회의는 비공개(closed)인가 또는 교회 위원회 위원이 아닌 사람이 그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가? “공개 회의”(public session)와 “실행 회의”(executive session)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조항 34, 128)

회의들은 일반적으로 공개된다. 그러나 교회 위원회 회원이 아닌 사람은 의장(목사)과 사전에 의논하지 않고는 어떤 회의에도 참석하려 해서는 안 된다. 위원이 아닌 사람은 위원회에서 어떤 투표권도 없으며 전 위원회가 승인할 경우 단지 발언권만을 가질 수 있다. 어떤 규정들은 위원들로만 참가를 제한할 수도 있다.

새 개정 로버트 회의 절차 (Robert's Rules of Order Newly Revised)\*\* (11차 개정판)는 공개 회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심의 회의나 위원회는 보통 (심지어 실행 회의가 아니라도) 비회원이 그 회의에 참석하거나 또는 제외될 것인지를 결정할 권한이 있다.”

“... 학교 위원회 같은 많은 공적 실체의 회의에 대중들이 참석할(attend) 수 있다. 마찬가지로 교회 협의회와 같은 어떤 사적 기관에서 교구민들이 참석할 수 있다. 이러한 참석자들은 회의체의 구성원들은 아니며 보통 참여할(participate) 수 있는 권한은 없다. 특히 공적 회의체와 같은 어떤 회의체는 비 회원들이 그들의 견해를 표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회의체가 채택한 관련 규정과 회원이 주장한 것에 종속되고 회의를 진행하는 임원의 통제 하에 그러한 것이 허용된다. 종종 규정이나 관례에 의해 발언자의 발언 시간이 제한되고 관련성이 긴밀히 체크된다.”

새 개정 로버트 회의 절차 (Robert's Rules of Order Newly Revised)\*\* (11차 개정판)는 실행 회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 회의의 회원이나, 특별 초대된 사람, 그리고 피고용인이나 직원이 그 회의체나 그것의 규정으로 회의장에 남는 것이 허용될 필요가 있는 사람들을 결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샐행회의 시에 개최되는 부서나 위원회 회의의 경우에는 그 기관의 회원 여부에 상관없이 부서나 위원회의 회원이 아닌 사람은 (달리 특별하게 초대되거나 참석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 그 회의에서 제외된다.”

\*\* 이 책은 우리 교단이 회의 절차를 위해 참고하는 책이다. (장정 34조)

24. 개교회에서 인정 받은 전도사 자격(local minister's license)을 갖고 전임으로 사역한 것은 안수 자격 요건으로서 인정되는가? (조항 531, 533.3, 534.3)

*아니오. 개교회 인정 전도사 자격은 안수 요건으로서 인정 받을 수 없다. 개교회 인정 전도사(local licensed minister)는 평신도이고 직무를 부여 받은 사역자로 고려되지 않는다.*

25. 교회에서 지도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성적으로 잘못된 행동을 할 위험을 감소하기 위한 절차를 만드는 일에 책임이 있는 실체는 무엇인가? (조항 129.30)

*개교회 교회 위원회. 그러한 잘못된 행동이 발생할 경우에 반응하기 위한 정책이 승인된 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26.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잘못된 성적 행동으로 인해 고소될(charge) 경우 그러한 사람이 어떤 형태로라도 개교회에서 지도자나 이사, 사역 자리를 가질 수 있는가? (조항 540.9, 916; 2013년 12월 3일에 중앙 감독회가 승인한 지침은 540.9항 내용이 평신도에게도 적용된다고 규정한다).

*아니오.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인 이외의 어떤 역할도 할 수 없다. 이것은 그 사람이 교회를 위한 봉사의 어떤 영역에도 고용되거나 자원봉사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참고: 주나 국가의 국내 법에 의해 이후에 성인 자격을 획득하지 않는다면, 미성년은 18세 이하의 모든 사람으로 정의된다.*

27. 임기가 끝나기 전에 교회 위원회 위원의 해임 가능성을 논의하기 위한 절차는 무엇인가?

*교회 위원회 위원은 징계 절차에 관련되지 않았으면 그 지위에서 임의로 해임될 수 없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회중의 투표에 의해 선출되었기 때문이다. 다음은 따를 수 있는 여러 선택들이다.*

a. 목사는 장정 122.1 항에 묘사된 "차이점들의 해소를 찾기 위한" 절차를 실행해야 한다. (장정은 마태복음 18장과 갈라디아서 6장 부분을 근거 성구로 제시한다).

b. 연회 감독은 그 교회가 위기에 처해 있음을 선포할 수 있고 (조항 126-126.2) 그리고 나서 전 위원회를 해임하기 위한 절차를 따를 수 있다. 그런 후 승인 하에 새 위원들을 지명한다. 또는

c. 적용 대상의 평신도 (조항 605) 또는 사역자 (조항 606) 징계 절차를 시작한다. (이 선택을 할 것이 강하게 권장된다. 왜냐하면 위기는 종종 교회를 갈라지게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28. 개교회 교회 위원회가 개교회에서 한 해에 제명할 수 있는 회원 수에 제한이 있는가? (조항 112.3, 120.1)

*아니오. 지난 중앙 총회는 이 절차에서 할 수 있는 최대치를 규정하는 단락의 삭제를 승인했다.*

*참고: 한 해 동안 또는 연속해서 두 해 동안 교회의 회원 중에 상당한 비율의 수가 제명되는 중이면 연회 감독과 담당 중앙 감독에게 통보할 것을 권고한다.*

29. 교회 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비 활동으로 선언된 교회 회원의 이름은 교회 회원 명부에서 즉시 제거될 수 있는가? (조항 109.2, 112.3)

*아니오. 중앙 감독회의 지침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1987년 4월 18일 자). “... 109.2항의 의도는 명부에서 회원들의 이름을 황급히 즉 2년 이내에 지우는 일을 허용하지 않기 위함이다 (조항 112.3). 이 기간 동안 태만한 회원은 비 활동 명부에 등재하든지 활동 회원 명부에 남겨 둘 수 있다.” 비 활동 개교회 회원과 관련해 중앙 감독회의 또 다른 지침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1987년 2월 16일 자) “... 회원의 비 활동 지위는 교회 위원회가 그와 같은 결정을 하는 날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30. 연회는 비 활동 교회의 재산을 그 교회가 해산되기(disorganized) 전에 처분할 수 있는가? (조항 104.3, 106.2, 106.3, 106.5)

*예.*

31. 개교회의 투표체(voting body)는 건물의 건축에 관해 투표할 필요가 있는가?

*예. 중앙 감독회의 지침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2002년 9월 19일 자) “... 건축의 최종 승인을 위해서는 자금의 차용 필요 여부에 관계없이 성도들의 투표가 요구된다.”*

32. 사람이 안수 받을 수 있는 연령에 제한이 있는가? (조항 533.3, 534.3)

*아니오. 지난 중앙 총회는 후보자가 안수 받기 위해 고려될 수 있는 최대 연령 규정 조항의 삭제를 승인했다.*

33. 연회 실행 위원회는 어느 경우에 개교회 목사 지명자의 승인을 해야 하는가? (조항 115, 117, 129.2, 159.8, 211.10, 225.14)



중앙 감독회의 지침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2013년 9월 17일 자). “... 단지 교회가 조직된 지 5년 이하이거나, 회원 수가 35명 이하이거나, 연회로부터 정기적으로 재정 지원을 받거나, 그 교회에 회원권이 있거나 보수를 받으며 사역하는 목사나 인정 전도사를 목회사역 지명자(a pastoral nominee)로 고려하는 경우가 아니면, 다른 모든 목회 사역 지명자의 경우에는 단지 연회 감독과 교회 위원회의 승인만이 요구된다.”

34. 개교회가 한 목사를 선출했으나 그 목사가 처음에 청빙을 거절했다가 후에 다시 그 청빙을 고려하고자 하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가? (조항 115-115.1)

중앙 감독회의 지침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2013년 12월 3일 자). “목사나 인정 전도사가 투표권이 있는 사람들의 투표에서 2/3 찬성표를 받았으나 청빙을 거절하면 교회 위원회나 후보자는 교회 전체의 투표를 다시 할 필요 없이 교회 위원회의 다수결 투표로 그들의 결정을 재고할 수 있다. 그 후보자의 결정이 교인들에게 공적으로 알려졌을 경우 그 후보자 청빙의 재고가 교회 위원회에 제출 되어야 하고 찬성 투표이면 교인 전체 투표를 다시 해야 한다.”